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808

발의연월일: 2025. 1. 24.

발 의 자: 박용갑·조승래·장철민

김용만・황 희・주철현

한민수 · 신정훈 · 조인철

서미화 · 정준호 · 황정아

박홍근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항공수요의 증가, 국내 대형 항공사의 합병으로 인한 저가항공사의 신규 노선 취항 등으로 인해 항공업계의 변화가 크고, 이로 인해 항공서비스에 관한 소비자 불만사항이 지속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령은 항공교통사업자로 하여금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유형과 피해내용 및 피해구제 처리결과 등이 포함된 '항공교통이용자 피해구 제 현황'을 반기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 나. 항공교통이용자에게는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현재 국토교통부가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 등은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에 근거하고 있어 개별 항공사 등으로 직접접수되는 소비자 불만사항의 전체 사항과 구제현황을 알기엔 제약이 많음.

이에 항공교통사업자들이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구제 등에 대한 정보를 직접 소비자에게 공개해, 소비자들이 관련 정보를 보다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사의 서비스 증진 노력을 독려하고자 함.

한편, 최근 일부 항공사가 교통약자의 권리에 대한 사항을 분명하게 고지하지 않는 등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에 소홀했으며, 휠체어 리프 트와 같은 이동의 필수적인 장비들을 갖추지 않는 점이 확인된 바 있음. 그러나 이러한 교통약자에 대한 항공사의 서비스 결함에 대한 정보를 정작 교통약자들이 찾기는 어려운게 현실임.

이에 국토교통부가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를 통해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 교통약자가 항공기 이용 시 서비스 및 피해구제 절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국토교통부가 실시하는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항목에 '교통약자 편의성'을 포함시켜, 사업자의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고이를 통해 교통약자 서비스 다양화를 독려하고자 함(안 제61조제6항, 제63조제2항 및 제64조제2항).

법률 제 호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6항 중 "한다"를 "하며, 이를 항공교통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3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제3호까지"를 "제4호까지"로한다.

4. 교통약자에 대한 항공교통이용 편의성

제64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제6호"를 "제7호"로 한다.

4. 교통약자에 대한 항공교통이용 편의성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1조(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등)	제61조(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등)
① ~ ⑤ (생 략)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항공교통사업자는 항공교통	6
이용자의 피해구제 신청현황,	
피해구제 처리결과 등 항공교	
통이용자 피해구제에 관한 사	
항을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u>한다</u> .	<u>ठ</u> ेम,
	이를 항공교통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 이
	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
	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
	<u>개하여야 한다</u> .
⑦ ~ ⑫ (생 략)	⑦ ~ ⑫ (현행과 같음)
제63조(항공교통서비스 평가 등)	제63조(항공교통서비스 평가 등)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서비	②
스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4. 교통약자에 대한 항공교통이
	<u>용 편의성</u>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 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 ⑥ (생 략)
- 보의 제공 등) ① (생 략)
 - ②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 1. ~ 3. (생 략) <신 설>
 - 4. ∼ 6. (생 략)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 ③ (생 략)

<u>5</u> .		
_	- <u>제4호까지</u>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64조(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정 제64조(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정 보의 제공 등) ① (현행과 같음)

2	 	 	

- 1. ~ 3. (현행과 같음)
- 4. 교통약자에 대한 항공교통이 용 편의성
- 5. ~ 7. (현행 제4호부터 제6호 까지와 같음)

<u>8</u> .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저	$\frac{1}{7}$	호	_	_	_													

③ (현행과 같음)